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309

2023. 11. 30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3. 11. 10. / 박윤옥 의원 등 13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○ 제안이유

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,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·개선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가. “건강취약계층” 및 “다중이용시설”의 정의를 신설함 (안 제2조)
- 나. 용어 및 인용 규정을 정비함 (안 제6조, 제15조)
- 다.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(안 제11조)
- 라. 석면 해체 등의 비용 지원을 규정함 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현 「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건강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석면을 해체·제거할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마련하고 일부 변경된 인용 규정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안건임

- 검토 결과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조에는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내용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내용은 없어 보이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* 석면은 단열·내열·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,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. 세계보건기구(WHO) 국제암연구소(IARC)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건강취약계층”이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, 어린이, 노인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.

8. “다중이용시설”이란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법 제22조제3항 및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4”를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2조”로 한다.

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) ① 시장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석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)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

의 소유자 등이 석면을 해체·제거할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 해체·제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.

제15조(중전의 제13조)제2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·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 · 제12조 (생 략)

제13조(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) ① 시장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석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)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석면 해체·제거할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 해체·제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.

제13조 · 제14조 (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)

제15조(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

단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 (생 략)

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16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